부패방지 임직원 행동지침

1. 개요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원산업의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어겨서는 안 될 윤리적, 도덕적 행동의 구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2. 행동 지침

1)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상호간 직장 예절을 지키며, 상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3) 상급자의 지시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부당성을 소명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차상급자 또는 제보를 통해 부당성을 개선한다.

(4)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업무 지연을 하지 않는다.

2) 이해관계자와의 금품수수, 금전대차 등 금지

(1) 이해관계자(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액수, 시기를 불문하고 일절 수수를 금지한다.

(2) 이해관계자와는 아래와 같은 계약관계를 맺거나 부당한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친인척이 아래 계약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윤리경영 신고처에 신고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 겸임
- 금전대차,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
- 이해관계자의 주식취득, 공동 투자
- 가족, 친인척 등의 부당한 취업 청탁

(3)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는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일절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 동료 관계가 악화되고 근무분위기를 해쳐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
- 이해관계자가 이를 약점으로 악용하여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잃을 수 있음

(4)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협력사와 부당 거래를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사에 본인 또는 배우자/친인척 명의로의 우회적인 투자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협력사와 업무 시 부패방지행동

(1) 식사, 술자리, 출장 경비 등의 전가 또는 신용카드, 외상 대금의 대납을 요구하지 않는다.

(2) 협력사로 출장 또는 외근시 협력사에게 식사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 협력사가 식사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1 인당 1 회 3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인사청탁, 상품판매, 보험가입, 다단계업체 참여, 금전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4) 부당한 대가를 목적으로 고의적인 업무지연을 하지 않는다.

(5) 공식·비공식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물질적 지원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행사일정을 사전 고지하지 않는다.

4) 깨끗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유지

(1) 경조사금은 통상 5 만원 이내로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승진, 영전, 취임등과 관련한 화환등의 증정, 수령은 검소하여야 하며 가급적 축전이나 전자메일을 사용한다.

(3) 도박성이 있는 화투, 포커, 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오락은 하지 않는다.

(4) 3 만원 이상의 간소한 수준을 넘은 선물을 부득이하게 수취하게 된 경우에는 선물의 관리 규정에 따른다.

5) 선물의 관리

(1)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수령한 선물의 가액이 3 만원 이상(외화는 원화 환산가액 적용) 일 때는 이를 즉시 총무팀에 신고 후 인도한다.

(2) 총무팀은 인도받은 선물을 관리하되 매년 말 품의를 득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단, 신고자가 매수를 원할 때에는 신고가액으로 이를 신고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6) 회사 자산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취득 금지

(1) 회사의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지 않는다.

(2) 퇴직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승인 없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업활동이나 중복 취업을 하지 않는다.

(4) 예산 집행은 예산 수립의 목적에 맞도록 하며 각종 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지출하지 않는다.

(5)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잡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6) 회사의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을 홍보 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강령은 2022 년 10 월 1 부터 시행한다.